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6일 김문호, 김영숙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12. 20)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

□ 제안이유

- 주요 간선도로 도로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시민에게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로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 실명관리를 하고자하는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도로 상시 순찰반의 편성·운영 및 직무를 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순찰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접수·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

도록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안 제6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p>○ 집행부에서는 종합관찰제, 동장일일 순찰, 구별 로드체킹 등의 각종 도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굳이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주요도로변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p> <p>○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 인력,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본 조례의 제4조제4항에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 월1회 순찰로도 도로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p>	<p>○ 현재 여러 가지 절차나 지침에 의해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거나 반영하여 도로의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관련부서 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부천시 전직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함.</p> <p>○ 사실상 주1회 순찰은 업무적으로 부담이 큼. 월1회 순찰도 가능할 것임</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7
의결 년월일	2010. 12. 23

발의연월일 : 2010. 12. 20..

발 의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4항에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사실상 주 1회 순찰은 시 집행부의 업무과중을 감안하여 월 1회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를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안 제4조제4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를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순찰반 편성·운영)</p> <p>① ~ ③ (생략)</p> <p>④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p> <p><u>주 1회</u>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p>	<p>제4조(순찰반 편성·운영)</p> <p>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p> <p><u>월 1회</u> -----.</p>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도로와 도로상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8조의 도로중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의 도로중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3. “적치물”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을 말한다.
4. “불법광고물”이란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5. “건설현장”이란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순찰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 상시 순찰반(이하 '순찰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②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순찰반은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 한다.

④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반의 직무) 순찰반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순찰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2. 적치물
3. 불법광고물
4.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제6조(관리대장 작성) ①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결과 보고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정하여 순찰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를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